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5,700,000	22,671,000
일반회계	636,900,000	19,107,000
특별회계	118,800,000	3,564,000
공기업특별회계	43,400,000	1,302,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800,000	624,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2,600,000	678,000
기타특별회계	75,400,000	2,262,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876,000	116,28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214,000	66,42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70,000	29,1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750,000	82,500
주택사업특별회계	820,000	24,600
치수사업특별회계	8,750,000	262,5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700,000	81,000
대지보상특별회계	480,000	14,4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22,000	66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1,060,000	1,231,8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420,000	342,6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8,000	10,140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50,466천원으로 한다.(일반예비비 5,731,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19,466천원)